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이
아래부터는 체약쌍방이라고 한다)는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두 나라(이 아래부터는 쌍방이라고 한다)
사이의 선린, 우호, 협조 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중조국경통과지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통과지점들의
통과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이 협정에서 《국경통과지점》이란 중조국경 양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도, 도로, 정거장, 강하천항구를 통하
여 국경을 출입하는 쌍방 또는 제3국의 사람들과 운수기
재, 화물 및 기타 물품들에 대한 국경통행검사, 세관검사,
위생검역, 동식물검역, 상품검사 등의 수속에 리용되는
특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국경통과지점》은 국제거래화물수송통과지점과 쌍방거래화물수송통과지점, 공무통로, 립시통과지점으로 나눈다.

국제거래화물수송통과지점으로는 쌍방과 제3국의 공민들과 운수기재, 화물, 물품을 통과시킨다.

쌍방거래화물수송통과지점으로는 쌍방의 공민들과 운수기재, 화물, 물품을 통과시킨다.

공무통로로는 국경출입 및 국경관리회담과 상봉 및 친선래왕 등의 임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원들을 통과시킨다.

립시통과지점으로는 쌍방의 화물과 그와 관련한 인원, 운수기재들을 쌍방 해당부문이 합의한 기간내에 통과시킨다.

제 2 조

1. 체약쌍방은 중조국경지역에 다음의 국경통과지점을 각각 설정한다.

중국측국경통과지점

조선측국경통과지점

1. 단 동.....신의주

2. 도 문	남 양
3. 권 하	원 정
4. 단지부두	신의주항
5. 집 안	만 포
6. 림 강	증 강
7. 남 평	무 산
8. 삼 합	회 명
9. 개산톤	삼 봉
10. 태평만	삭 주
11. 로호초	위 원
12. 장 백	혜 산
13. 고성리	삼 장
14. 사타자	새 별
15. 쌍무봉	쌍두봉

2. 이 조 1항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들의 위치와 종류, 기능은 이 협정의 부록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이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리의 구성부분이다.

3. 이 협정의 규정들은 쌍방이 이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리용해 오던 중조국경 공무통로와 림시통과지점들을 계속 리용하는것을 저해하지 않으며 쌍방은

이 협정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일들을 처리한다.

제 3 조

이 협정 제2조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의 쌍방 검사검역기관은 각기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쌍방 검사검역기관은 합의하여 검사검역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다.

제 4 조

1. 계약쌍방은 새로운 국경통과지점의 설정, 현 국경통과지점의 폐쇄, 국경통과지점종류의 변경, 국경통과지점의 위치와 통과시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합의된 문건은 이 협정의 구성부분으로 된다.

2. 만일 중조국경지역에 립시통과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쌍방 해당 부문들이 토의하여 합의한 다음 각기 국내법적절차를 거쳐 집행한다.

그와 관련한 국경통과질서문제는 사전에 쌍방 안전보위, 공안 부문들이 토의결정한다.

3. 립시통과지점에서의 통과에 대한 검사검역은 이 협정 제3조에 서술된 관리방법대로 한다.

제 5 조

1. 계약쌍방은 일방의 전염병의 발생,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국경통과지점을 립시로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방은 원칙적으로 폐쇄하기 5일전, 긴급한 경우 24시간전에 폐쇄하는 리유와 폐쇄기간을 다른 일방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정황을 제외하고 어느 일방도 마음대로 국경통과지점을 폐쇄하거나 국경통과지점의 위치와 통과시간을 변경시킬수 없다.

만일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국경통과지점을 폐쇄하거나 국경통과지점의 위치와 통과시간을 변경시켜 상대방에게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날자들을 국경통과지점의 휴식일로 한다.

중국측: 1월 1일, 음력설(음력정월 1일, 2일, 3일), 5월 1일, 8월 1일, 10월 1일

조선측: 1월 1일, 2월 16일, 4월 15일, 4월 25일, 5월 1일, 9월 9일, 10월 10일

국경통과지점의 통과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베이징시간으로 8시부터 18시까지(평양시간으로 9시부터 19시까지),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베이징시간으로 8시부터 17시까지(평양시간으로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철도통과지점에서는 쌍방사이에 합의된 철도운행시간표에 따라 집행하며 우에서 지적된 휴식일과 통과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이 협정 제2조 제1항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들이 문을 닫은 기간에 특별히 제기되는 국경통과보장문제는 쌍방 안전보위, 공안부문이 토의결정한다.

제 6 조

1. 쌍방의 국민들은 이 협정 제2조에 지적된 국경통과지점과 쌍방이 합의하여 설정한 공무통로 및 임시통과지점을 통과할 때에는 효력있는 려권 혹은 려권을 대신할수 있는 효력있는 국제려행증명서 또는 중조국경통행증(이 아래부터는 국경통행증이라고 한다)을 소지하여야 한다.

2. 국경통행증, 차량국경출입표식의 발급과 사용방법은 계약쌍방사이에 이미 이룩한 해당한 합의에 따른다.

3. 쌍방의 려권 또는 국제려행증명서소지자들은 쌍방사이의 사증면제에 관한 합의에 따라 사증면제대상인 경우에는 사증을 받지 않으며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한 사증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쌍방의 국민들은 상대방의 경내에서 그 나라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1. 체약쌍방은 국경통과지점의 검사검역기관들사이의 회담 및 상봉, 사업상연계 등을 위한 제도를 세울수 있다.

2. 이 협정에 지적되지 않은 증조국경통과지점 및 그 관리제도와 관련한 기타 문제는 체약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며 합의하기전에는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정리행과정에 제기되는 분쟁문제는 체약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 9 조

체약쌍방은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이 협정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 10 조

체약쌍방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자기 나라 국내법적절차를 끝낸 다음 호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협정은 마지막서면통지를 한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5년간 유효하다.

만약 어느 일방이 이 협정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협정의 폐기를 서면으로 상대방에 제기하지 않는한 이 협정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간씩 연장된다.

이 협정은 2001(주체90)년 11월 24일 평양에서 서명되었으며 중국어와 조선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된 이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李肇星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부 록

중조국경통과지점의 위치와 종류, 기능

1. 단둥-신의주 국제통과지점

1) 단둥-신의주 국제려객화물철도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둥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키며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을 가진 제3국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2) 단둥-신의주 국제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둥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키며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을 가진 제3국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2. 도문—남양 국제통과지점

1) 도문—남양 국제화물철도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도문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쌍방과 제3국의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2) 도문—남양 국제러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도문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은성군 남양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키며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을 가진 제3국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3. 권하—원정 국제러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 경신항 권하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선시 원정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
시키며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을 가진 제3국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4. 단지방두—신의주항 쌍방화물배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단둥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쌍방의 화물들을 통과시킨다.

5. 집안—만포 쌍방관광객화물철도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집안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강도 만포시에 각각 위치하
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6. 림강—중강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림강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강도 중강군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7. 남평—무산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화룡시 덕화진 남평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무산군 칠성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러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8. 삼합—회령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룡정시 삼합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회령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
시킨다.

9. 개산론—삼봉 쌍방려객화물도로운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룡정시 개산
론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은성군 삼봉
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10. 태평만—삭주 쌍방려객화물배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료녕성 관전만족자
치현 태평만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북도 삭주
군 방산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
시킨다.

쌍방은 통과지점시설건설을 끝낸 다음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확인한 후 정식 집행한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통과시킨다.

11. 로호초—위원 쌍방려객화물배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집안시 로호초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강도 위원군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 동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쌍방은 통과지점시설건설을 끝낸 다음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확인한 후 정식 집행한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통과시킨다.

12. 장백—혜산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장백조선족 자치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 혜산시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 동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쌍방은 통과지점시설건설을 끝낸 다음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확인한 후 정식 집행한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통과시킨다.

13. 고성리—삼장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화룡시 고성리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 대흥단군 삼장리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통행증을 가진 쌍방 공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쌍방은 통과지점시설건설을 끝낸 다음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확인한 후 정식 집행한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통과시킨다.

14. 사타자—새별 쌍방려객화물도로수송통과지점

이 통과지점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훈춘시 사타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북도 새별군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 통과지점들로는 효력있는 려권 및 사증 혹은 국경
통행증을 가진 쌍방 국민들과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
시킨다.

쌍방은 통과지점시설건설을 끝낸 다음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문건을 교환하여 확인한 후 정식 집행한다.

그전까지는 현재의 방법대로 계속 통과시킨다.

15. 쌍목봉—쌍두봉 공무통로

이 공무통로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안도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강도 삼지연군에 각각 위치
하고 있다.

이 공무통로들로는 쌍방의 해당부문이 합의한 기간에
쌍방 공무인원들을 통과시킨다.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해당부문이 합의한 기간에 쌍방
화물, 운수기재들을 통과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국경통행과 검사검역 문제는
이 협정 제4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